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2023.	
연 월	일	(제	회)

의 결 사 항

공 공 기 관 의 운 영 에 관 한 법 률 일 부 개 정 법 률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〇〇〇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인 감사기간을 확대하여 감사를 내실화하고, 정부 결산 과정 일정 등을 최소화하여 국회 결산 심사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제출시기를 2월말에서 3월 15일로 연장 나. 정부 결산 과정 일정 등을 최소화하여 국회 결산 제출일 기준으로 결산 일정을 총 21일 단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원 등과 합의하였음

라. 기 타:

법률 제 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월 말일"을 "3월 15일"로, "3월 31일"을 "4월 1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월 10일"을 "5월 15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7월 31일"을 "7월 10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8월 20일"을 "7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결산서의 제출) ① (생	제43조(결산서의 제출)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	2
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u>2월 말일</u> 까지	<u>3월 15일</u>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각각 제출하고,	
<u>3월 31일</u> 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	<u>4월 10일</u>
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	
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	
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확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	3
의 장은 매년 <u>5월 10일</u> 까지 제2	<u>5월 15일</u>
항에 따라 확정된 공기업・준정	
부기관의 결산서와 그 밖에 필	
요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	
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결산서등을 제	4
출받은 감사원은 그 공기업・준	
정부기관 중 「감사원법」 제22	

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과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생 략)
-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u>8월 20일</u>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생 략)

<u>7월 10</u>
일
⑤ (현행과 같음)
<u> </u>
<u>7월 30일</u>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44) 215 - 5177